

www.moel.go.kr

근로
계약

근로
시간

임금

최저
임금

모성
보호

해고

퇴직
급여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021년

2021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	2
2	근로시간	6
3	임금	12
4	최저임금	16
5	모성보호	21
6	해고	24
7	퇴직급여	28
●	고용노동 Q&A 참고	33

“올바른 노사관계의 첫 걸음”

1. 근로계약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7가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 임금 계산방법
- ✓ 임금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 휴일
- ✓ 연차 유급휴가
-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위반시 벌금
최대 500만원

표준 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서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책자료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 근로계약 기간
- ✓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 ✓ 휴게시간·근로시간
- ✓ 휴일, 휴가
- ✓ 근무장소·업무내용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 소 :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주휴일 : 매주 __요일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해야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존해야 할 주요서류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 (법 제66조) 등

사건

입사 즉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며, 억울함을 호소



⇒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근로시간 판단 기준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워크숍/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

- 22:00~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대법 2014다74254, 2017.12.5)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

유급 휴일

-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20.1.1.) 300인 이상 ▲('21.1.1.) 30~299인 ▲('22.1.1.) 5~29인

구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없음
유·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유급	유급

-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기업규모별 주요 개정법령 시행시기

항목	규모	'18.3.20 (공포)	'18.7.	'19.7.	'20.1.	'21.1.	'21.7.	'22.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300인 이상 민간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8.7.1)	[Progress bar]						
		(특례 제외 업종, '19.7.1)	[Progress bar]						
	• 50~299인 민간기업		('20.1.1)	[Progress bar]					
	• 5~49인 민간기업					('21.7.1)	[Progress bar]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300인 이상 민간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Progress bar]					
	• 30~299인 민간기업			('21.1.1)	[Progress bar]				
	• 5~29인 민간기업						('22.1.1)	[Progress bar]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관련 법령 참고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되는 근로시간 법령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 연소자(18세 미만)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휴일 근로 가능

- 일반여성: 본인의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 임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2020.3.31.)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대상)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80% 이상이면 15일+ ∞ ,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 통보 요구 7.1.~7.10. (6개월 전, 10일간)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 통보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 통보 10.31.까지(2개월 전)
--	--	---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개정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 통보 요구 연차 9일 (1월~9월 개근으로 발생)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연차 2일 (10월~11월 개근으로 발생) 12.1.~12.5. (1개월 전, 5일간)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 통보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 통보 11.30.까지(1개월 전) 12.21.까지(10일 전)
--	--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시기가 다음에 주의

사건 1

휴게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직원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휴게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참고

최근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예방

사건 2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을 만근하지 않았음을 주장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사건 3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20시간(시급 9,000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 3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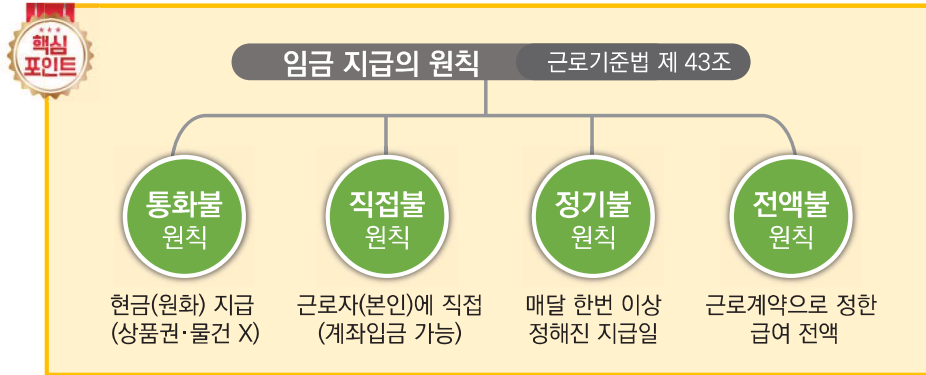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을 주고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여야 함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
 - 호의적·은혜적 금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요약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급 산정이 원칙, 일급·주급·월급은 시간급 환산 $\text{시간급} = \frac{\text{월급으로 정한 임금}}{\text{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text{평균임금} = \frac{\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text{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고예고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5인 이상 적용) 산전후 휴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 휴업보상·장애보상·유족보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 금품

•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

판례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

대판 1997.8.29, 97도1091

임금체불과 시효

임금체불이란?

-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 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을 위반
(*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소멸시효
(3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
(5년)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
(형사소송법 제249조)

임금의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금품청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음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사건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

사업주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B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사업주A씨가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자, B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내사종결

사건 2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2

사업주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사업주C는 직원D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형사처벌




직원D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소액 체당금)을 선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 C로 부터 근로자에게 선 지급한 체당금을 회수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꼭
알아야할
4가지

최저금액	<p>'21년 기준:시급 8,720원, 월급(약 1,822,480원)</p> <p>* '20년 기준:시급 8,590원, 월급(약 1,795,310원) *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포함 산정한 고시금액 기준</p>	
포함금액	<p>매월 지급되는 임금</p> <p>-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의 초과분 포함 ('21년 기준) * '21년 기준:상여금 15%, 현금성 복리 후생비 3%의 초과분 포함 * '20년 기준:상여금 20%, 현금성 복리 후생비 5%의 초과분 포함 * '19년 기준:상여금 25%, 현금성 복리 후생비 7%의 초과분 포함</p>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	<p>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p> <p>-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감액적용	<p>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p> <p>※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적용</p>	

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키워드 3가지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
-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 수** |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으로, 월단위로 산정할 경우 208.57시간 (약 209시간)
- 월환산액** |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와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참고

- 산정단위기간** | 상여금 등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로, 상여금 등을 1년 단위로 산정하는지 매월 단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달라짐
- 지급주기** |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로, 매월 지급하는지 격월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미산입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④ 기타 ①②③에 준하는 임금(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①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라기금, 농률수당, 근속수당	월 환산액의 25%초과분 산입(19년 기준) 20%초과분 산입(20년 기준) 15%초과분 산입(21년 기준)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복리후생적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한 것	미산입	
	통화로 지급 한 것	월 환산액의 7%초과분 산입(19년 기준) 5%초과분 산입(20년 기준) 3%초과분 산입(21년 기준)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최저임금 현황

(기준: 원)

적용년도	시간급	임금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2021	8,720	69,760	1,822,480
2020	8,590	68,720	1,795,310
2019	8,350	66,800	1,745,150
2018	7,530	60,240	1,573,7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6	6,030	48,240	1,260,270
2015	5,580	44,640	1,166,220
2014	5,210	41,680	1,088,890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3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15%*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3%*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미산입 비율은 5년간 단계적 축소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text{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text{이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text{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월급 1,800,00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table border="1"> <tr><td>기본급</td><td>1,500,000원</td></tr> <tr><td>식대</td><td>100,000원</td></tr> <tr><td>교통비</td><td>100,000원</td></tr> <tr><td>시간외수당</td><td>100,000원</td></tr> <tr><td>합계</td><td>1,800,000원</td></tr> </table>	기본급	1,5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시간외수당	100,000원	합계	1,800,000원	<table border="1"> <tr><td>기본급</td><td>1,500,000원</td></tr> <tr><td>식대·교통비</td><td>145,358원*</td></tr> <tr><td>합계</td><td>1,645,358원</td></tr> </table> <p>* 식대교통비 20만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인 54,562원을 초과하는 금액</p>	기본급	1,500,000원	식대·교통비	145,358원*	합계	1,645,358원	<p>1,645,358원 ÷ 208.57시간 = 7,889원 < 8,720원(*'21년 기준)</p> <p>➔ 최저임금 위반</p>
기본급	1,500,000원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시간외수당	100,000원																	
합계	1,800,000원																	
기본급	1,500,000원																	
식대·교통비	145,358원*																	
합계	1,645,358원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경비원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사건 1

최저임금 위반, 뒤늦게 합의했으나 처벌된 사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A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했으나, 형사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사건 2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사업주B씨는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시급 7,600원을 지급



근로계약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야함
⇒ 최저임금 차액(시간당 1,120원) 지급 (2021년 기준)

참 고

'18.3.20. 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한 고용상의 불이익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 지원
단,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등 규정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 입맞춤·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 언급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 (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모성보호 제도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 보호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 임산부에게는 야간·휴일근로 금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 200만원) 지급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근로자 동의(합의)·요청에 의함

- 임의퇴직
- 합의퇴직



근로자 의사에 반함

- 징계해고·통상해고
- 경영상 해고



근로자 의사와 무관

- 정년도달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 사망
- 사용자 파산 등

해고 등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외

-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을 행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반효과

- 당해 해고는 무효, 벌칙 적용

해고금지 기간의 효력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시에는 무효가 됨
- 사용자는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한 경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의 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 일 전까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 예고
-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예고를 하였다고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방법

-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됨(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과 구별)
- 대상 근로자, 해고사유, 시기를 명확화 (불확정기한, 조건부 예고는 무효)

해고 예고의 예외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폐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 ▶ 그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월급제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산정 예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 시급: 11,961.72원(250만원/209시간), 통상일급: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통상일급(95,693.76원) × 30일분 = 2,870,812원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시간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요건	시급 9,000원, 월(4h)·수(7h)·금(7h) 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산정 예시	통상일급(32,400원) = 9,000원 × 3.6시간 [(18시간*4주)/(20일)] 해고예고수당(972,000원) = 32,400원 × 30일

사건 1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

사업주A는 가게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는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중요 건물·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은 해고예고의 예외 가능

사건 2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 자진 퇴사한 사례

사업주B는 직원C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직원C는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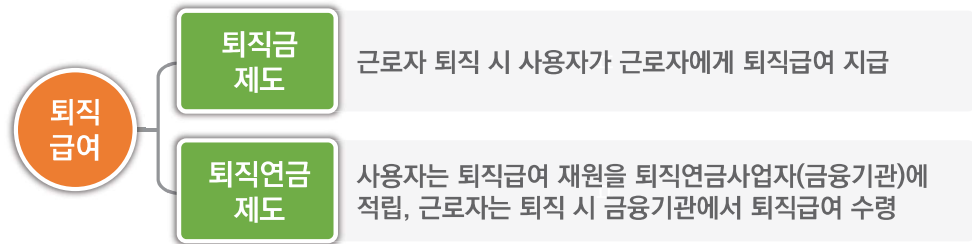
사업주A가 직원C에게 2주 뒤 그만두라고 한 행위는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하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대판 1975.7.22, 74다1840 외 다수 판결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계속근로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 기업의 합병·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 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단,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제외)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제외 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퇴직금의 산정

산정방법

$$\text{퇴직금} = \frac{\text{1일 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text{총 계속근로기간}}{365\text{일}}$$

* 1일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예시

월 250만원, 근무기간 '17.2.1~'19.6.30

$$\text{퇴직금} = \frac{82,417.58\text{원} \times 30\text{일} \times 880\text{일}}{365\text{일}} = 5,961,161\text{원}$$

* 1일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

퇴직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moel.go.kr/pension) ⇒ 퇴직급여 계산기

The screenshot shows the MOEL Pension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text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menu with several items: '퇴직연금소식', '퇴직연금 소개', '제도도입-운영하기', '퇴직연금 통계', '자주 묻는 질문', '자료실', and '금융사-상품정보'.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with the text '튼튼한 노후생활, 퇴직연금과 함께 하세요!' and an image of a family. Below the banner are three main navigation buttons: '퇴직연금 소개', '도입-운영 한눈에 보기', and '퇴직급여계산기'. The '퇴직급여계산기'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is button, there is a small text box that reads '나의 조건에 맞추어 정확하게 퇴직급여를 계산해보세요!'.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

• 확정기여형(DC) 10명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

사용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 근로자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700만원)
 - *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연900만원으로 확대 ('20~'22년 까지 한시 운영)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 연금수령 연차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20년부터 적용)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22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DC(IRP)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가능	가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가능	가능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하여 근로자가 요양비 부담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시행일 '20.4.30)	가능	가능
파산선고, 화생물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가능	가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가능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	불가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사업주A는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
250만원을 2년간 지급하였음을 주장



-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월별로 나누어 준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
-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작성

? 2

사업장 내부수리로 일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 [4인 이하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무급처리 가능
- ➔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 3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 제6조제4항)

? 4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에 산입 여부

- ➔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는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미 산입 임금으로 규정
- ➔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5

일용직·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지급

? 6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7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8

사업자등록 신규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 성립신고서 제출 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 가입 제외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9.7.16 부터 일부 적용)

? 9

근로자 입회사 시 고용보험 처리

- ➔ 채용 시: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 퇴사 시: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4인 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항 목	적용여부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 제17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근로 시간	×	근로기준법 제 50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1 명단공개 · 신용제재의 목적 및 대상

○ 명단공개·신용제재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인적사항 및 체불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도평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

○ 누가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매년 8. 31.)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기법제43조의2)
-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매년 8. 31.)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기법제43조의3)

2 명단공개 · 신용제재 방법

공개 및 제재 방법

① 명단공개

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등에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를 3년간 게시 • ② 신용제재

② 신용제재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내상사의 인적사항·체불정보 등을 제공하여 7년간 신용정보 업무에 활용 (신용거래 중단, 카드사용 불가 등)

명단공개 · 신용제재 제외(해제) 대상
(근기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호~5호)

- ① 사망 ② 체불임금 전액지급
-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 ④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⑤ 체불임금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청산계획 및 지급수단 방안을 수명한 경우

3 연도별 명단공개 · 신용제재 실시현황
* '20년 11월 기준

연도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명단공개	344	116	403	365	385	362
신용제재	558	191	675	607	673	647

교육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가요?

교육자료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직접 강의!!**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홍보동영상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스북
 (facebook.com/moel.tomorrow)
 유튜브에서
 “노른자노동법” 또는 “노노법”으로 검색



<1편 근로계약>



<2편 근로시간>



<3편 임금>



<4편 최저임금>



<5편 직장내성희롱&모성보호>



<6편 해고>



<7편 퇴직급여>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021년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주소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인쇄처	(주)동방디앤피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책자의 파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